

제123차 이사회 의사록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일 자	2017. 12. 26 (화) 10:00	기록자	정 운 상
장 소	세종문화회관		
제적이사	총 15명		
출석이사	12명	불참	3명
참 여 자	감사 1명		

○ 의결사항

의안번호	건 명	의 결 내 용
제340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1호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2호	대관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3호	취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4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5호	호봉세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6호	2018년 안전분야사업 외주 운영계획(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7호	2017년 중장기발전기금 과실금 처분(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8호	2017 회계연도 예산이월(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49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 회의결과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17년 12월 26일

이사장

(인)



이사

(인)

상임이사

(인)



이사

(인) 김기

이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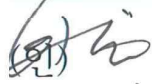


이사

(인) 최

이사

(인)



이사

(인) 김

이사

(인)




이사

(인) 최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최

이사

(인)



감사

(인) 최

세종문화회관 「제123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12. 26.(화) 10:00~11:48
- ◆ 장 소 : 회의실(사무동 4층)
- ◆ 참 석 : 13명(이사장 및 이사 12, 감사1)
이사장-김00, 이사-권00, 김00, 김00, 김00, 박00, 안00,
이00, 이00, 조00, 최00, 이00, 감사-최00
- ◆ 안 건
 - 제340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 제341호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42호 대관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43호 취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44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45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46호 2018년 안전분야사업 외주 운영계획(안)
 - 제347호 2017년 중장기발전기금 과실금 처분(안)
 - 제348호 2017 회계연도 예산이월(안)
 - 제349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 보고사항
 - 2017년 기관성과급 예산전용

I. 성원보고

- 재적이사 15명중 이사 12명, 감사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최하다

II. 의안심의

- 이사장 김00 : 제340호 안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정관 일부 개정정관(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정관 제27조(서면결의) ①항 조문 중 <경미한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제외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로 서면결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장 김00 : 제341호 안건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므로, 민법 제 62조에 의거하여 위임 범위를 특정한 행위에 한해서 대리하는 것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위임장의 내용 중 위임범위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장 김00 : 제342호 안건 대관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새로 만들어지는 세종S씨어터와 관련하여 제2조(대관범위)에 신설되는 세종S씨어터를 추가하고, 제9조(사용료 특례)에 대관계약 해지 시 S씨어터 대관료 반환 규정사항을 보완하며, <별표 2>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본시설 사용료에 세종S씨어터를 추가하고, 기타사항에 공연장 대관내규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 사 김00 : 당초 안건에는 제342호 안건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있었는데 갑자기 빠졌으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사님들께 송부하기 일주일전에 서울시에 보내서 검토를 받음. 직제규정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서 보수규정의 개정없이 직제규정만 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음. 해당 안건관련 해서는 향후 보수규정 개정과 함께 직제규정을 고쳐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그래서 이번에는 직제규정 개정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번에 보수규정 개정안건과 함께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통보를 검

토하는 와중에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변경안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송부가 늦어졌음

- 이 사 김00 : 예술단 단장의 공석기간은 공연계획 수립과 단원 연주 및 연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짧을수록 좋은데, 보수규정 개정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해결책이 있어야함
- 이 사 이00 :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그러나 서울시 문화본부의 의견은 투자출연기관에서 인력의 채용이나 예산운영과정에서 기존에 규정들이 적절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문제가 생김. 그러므로 인력채용 및 운영하는 문제는 관련규정 모두를 완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이후에 실무적으로 서울시 문화본부나 공기업담당관과 협의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 될 것 같음
- 이사장 김00 : 직제규정 개정 안건 관련해서는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가 합의를 통해 예술단체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바람

- 이사장 김00 : 제343호 안전 취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제27조(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 중 1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분할사용 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또한 제46조(해고예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도 해고예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장 김00 : 제344호 안전 『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제13조(채용제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므로 채용연령 제한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법률개정용어를 개정하여 반영하며, 제31조(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사합의’에 따라 <회관이 정하는 바>로 조문을 수정하였음.
또한 제32조(휴직기간) 1항은 제31조 제2호(2. 업무상 상병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의 경우를 추가하여 1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제5항은 육아휴직은 3년 이내로 하며 최초 1년은 1회 분할사용 가능하며 다음 2년은 분할사용 할 수 없

는 것으로 사용방법을 보완하였음

제33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사합의’에 따라 육아휴직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다음 2년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36조(당연퇴직)는 인사규정 제37조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정년 또한 당연퇴직 사유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 사 조00 : 당초 <市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 조치>에는 인사규정 제37조 정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빠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경영본부장 김웅겸 : 결론적으로 상위법상 정년은 60세임. 그러나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 도달하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이며, 예술단 단원의 경우는 매년 12월 말일임.

컨설팅결과대로 한다면 예술단 단원들은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도달한달 말일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이전부터 노사단체협약사항으로 예술단단원의 경우는 12월말일로 퇴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컨설팅결과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개정을 못하는 것임

- 사 장 이승엽 : 수정된 안건들의 대부분이 서울시의 컨설팅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이중 일부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들임.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문제 같은 것들인데 정년 관련해서는 교섭에 올라와있는 조항임. 회사입장에서는 정년을 예술단원과 사무직 직원들을 맞추자는 데 까지는 의견을 일치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노사 간에 협의 중임.

세종문화회관의 구성원들의 정년이 예술단마다 틀리고, 사무국과도 달라서 55세, 58세, 60세 등 다양했으나 현재 상위법에 따라 모두 60세로 나이는 통일되었음. 그러나 퇴직일이 통일이 안 되어 있음.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주기를 희망함

- 이사장 김00 : 제345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제18조(승급기간의 계산) 조항에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동안을 승급기간

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이사장 김00 : 제346호 안전 2018년 세종문화회관 안전분야사업 외주 운영계획 (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이 사 이00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부분을 100% 용역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인지 질의하다.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세종문화회관에는 시설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직원들이 있음. 예를 들면 승강기유지보수, 전기, 방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설운영팀에 속해 있음. 직원들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엘리베이터 등 안에 들어가서 기계를 만지는 것은 원래 설비를 공급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오고 있음. 무대기계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 사 이00 :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다중 이용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안전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함. 연간 훈련계획이나 실제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편인지 질의하다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종로소방서와 합동해서 실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 이사장 김00 : 그동안은 안전사업분야는 외주로 계속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시설관리부분은 완전히 외주용역을 줬었는데 외주용역직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2014년도에 정규직 일반 시설 공무원으로 채용했음. 그래서 현재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계(엘리베이터 등) 안에 들어가서 벨트체인을 손본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일들은 공급업체에 일부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하고 있음.
- 이 사 이00 : 같은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6개의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경영본부장 김웅겸 : 건물마다 건축 시기가 다르다보니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가 모두 다르며, 전문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각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와 세종문화회관의 시설 관리 공무원 직원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음.
- 이사장 김00 : 안전문제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하여 주기를 당부하다.
- 전원 : 숙련된 인력과 정비 및 보수기술을 보유한 기존에 관리했던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장 김00 : 제347호 안건 2017년 중장기발전기금 과실금 처분(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이 사 이00 : 세종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시설에 대한 필요재원이 발생할 것이다. 향후에는 시설투자문제 등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때 기금원금에 대한 1천만원 가량의 이자를 일반회계 세입처리 하는 것보다는 문화본부와 논의해서 중장기발전기금의 명칭에 적절한 적립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전원 : 2017년 중장기발전기금 과실금 10,474천원을 세입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장 김00 : 제348호 안건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이월(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전원 : 2017년 사업 집행액 중 2018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뮤지컬단 정기 공연 <광화문 연가>의 사업비중 155,246천원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재심의 결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재시행을 위한 151,623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장 김00 : 제349호 안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 이 사 조00 : 자료 중 주요사업현황 보면 국악관현악단 예산이 2억6천9백만원, 무용단이 3억4천3백만원 이런 식으로 합창단까지 4개 단체가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이 20억이 채 안된다. 이와 비교해서 기획공연 및 주변활성화사업과 나눔연계 공연이 대략 27억의 예산이 잡혀있다.

201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맞이해 개관기념공연을 크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위의 4개 예술단체가 거의 2억 혹은 3억 가지고 1년에 다섯 번씩 여섯 번씩 공연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기획예산공연은 20억씩 굉장히 거대하게 잡혀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청소년국악단, 유스오케스트라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비영리·무급단체가 쓰는 예산하고 일반 유급단체가 쓰는 예산이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또한 걱정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최고를 지향하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중 하나인 서울시 예술단의 예산이 2억 혹은 3억 거의 2억5천 이런 규모라는 것은 강남구어머니합창단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세종문화회관은 9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예술단체를 위해서 서울시가 문화서

울을 지향하는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어떻게 꾸준히 실현해 오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40년 이상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공연해온 예술단체의 역사가 서울시의 문화예술의 산역사라고 보여지며 또한 거대도시 서울시가 예술단체를 어떻게 육성·발전시켜왔는지 보여주는 자체가 서울시문화행정을 알리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공연을 기획공연으로 유치함으로써 20억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또한 앞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이 41년, 50년, 100년의 그런 것을 내다본다면 공공예술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몸담고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 사 장 이승엽 : 자세한 내용을 공유를 못 해서 그럴 텐데, 개관 40주년 기념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술단 단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예술단별 사업예산이 적게 보이는 것은, 인건비 등의 예산은 따로 있으므로 사업예산이 작아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임. 그러나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실행단계에서 고민을 더 하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방법을 찾아보겠음
- 이사장 김00 : 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면밀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람
- 전원 : 2018년 예산은 총 49,590백만원으로 사업비 15,303백만원, 인건비 23,094백만원, 관리비 10,951백만원, 예비비 242백만원에 동의하다.

Ⅲ. 보고사항

【 2017년 기관성과급 예산전용 】

- 경영본부장 김웅겸 : 2016 사업연도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성과급 지급률 130%를 결정 받았으나 기관성과급 예산편성은 매년 70%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잔액에서 예산전용하는 것을 보고하다.

Ⅳ. 폐회선언

- 이사장 김00 : 재단 안전에 여러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다